

■ 기획진단 · 개정가족법 시행 1년

여성 지위 개선 이면엔 과도기적 혼란

호적상 친권자 변경돼도 주민등록 변경 힘들어

“유산을 새엄마와 남동생이 공동상속할 경우 어머니에게로 간 재산은 이복 동생들에게로 넘어가게 된대요. 남동생과 고민하다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포기하겠다고 해서 남동생이 단독 상속하기로 했어요. 새엄마 밑으로 입양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 일 법으로만 되는 것 아니냐 싶어 그만 두었어요.”

앞으로는 우리집 같은 재혼 가정에 늘어날텐데 계모자 관계를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자관계를 부정하는 건 혈연주의에 입각한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계모와 지극히 사이가 좋았던 김진희(31, 강남구 개포동) 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상속처리과정에서 발견한 개정가족법의 또다른 측면.

개정가족법이 시행된 지 1년. 가족법 개정은 몇몇 독소조항을 남기긴 했어도 여성들의 법적 지위 개선에 크게 기여한 여성운동의 성과였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개정가족법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 개정가족법의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가족법의 시행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조항은 친권과 재산분할청구권 문제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개정전 가족법에서는 적모서자와 계모자 관계를 법정모자로 인정해 생모보다 적모가 친권을 갖게 되고, 생모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혼인하였을 때 후처가 법적인 친권을 갖게 돼 있었으나 개정과 함께 이 관계는 인척관계로만 인정된다. 따라서 법정모자일 때 생기게 되는 친권이나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이다.

“당신은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다”

적모서자와 계모자 관계는 시행과정에서 소급적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법정모자 관계를 부인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노후의 생활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

남편이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가 전 가족법에 따라 부인의 동의없이 호적에 올라 있을

경우 아내는 원치 않아도 그 아이의 법적 어머니로 인정되었다. 남편의 외도와 그 관계의 결과로 생긴 아이가 자기도 모르는 새 호적에 올라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심한 마음 고생을 해야 했던 것이 여성들의 사정이었다.

또 아이가 있는 남자와 결혼



● 전문가 제언

제2의 가족법개정 운동이 필요하다

동성동본 금혼규정, 호주제 폐지 절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지난 89년 12월 19일 제3차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한민국 전 여성의 숙원이던 가족법상 남녀불평등, 부부불평등의 조항이 대폭삭제, 폐지 내지는 신설되어 명실공히 가족법 내에서의 남녀평등, 부부평등의 꿈이 어느 정도는 실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가족법을 살펴보면 남녀차별의 근간이라고 생각되어 폐지하기로 제안되었던 호주제도가 폐지 대신 수정되는 것으로 그쳤으며 동성동본 불혼제도가 고스란히 남아 있음으로써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요소가 완전히 없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신설된 이혼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있어 분할의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간 논쟁의 소지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적모서자, 계모자 관계에 있는 모자관계를 91년 1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소멸시킬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적모나 계모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개정 가족법이 시행되고 제일 많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바로 이혼 후 자녀를 기르고 있는 생모의 친권문제이다. 즉 기왕에 이혼으로 자녀를 기르고 있었던 생모가 친권자로 지정을 받는 일, 그리고 친권자로 지정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주민등록상으로는 모와 자녀가 '동거인'으로 기록되는 주민등록부상 기재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해당 공무원의 개정가족법에 관한 충분치 못한 인식과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신속하지 못하고 미숙한 홍보활동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무엇보다도 다시 가족법개정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절실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호주제도, 호주순위 및 '동성동본금혼규정'의 폐지이다.(민법 제809조)

89년 가족법이 개정되었다는 뉴스가 나가자마자 문의전화와 빗발쳤고 오늘 현재도 동성동본금혼규정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담은 줄을 잇고 있다.

당연히 없어졌다고 생각하여 마음놓고 결혼을 하려던 남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법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이 법을 악용하여 여성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남자들

이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우리 고유의 전통이 아닌 것은 물론 근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학상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동성동본금혼' 법으로 인하여 이제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는 남녀로 하여금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으며 호적공무원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혼인신고를 음성적으로 한다는 말까지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어 공무원들의 비리를 조장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이미 본상담소에서는 90년 1월 1일부터 '동성동본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으며 91년 8월 29일에는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강연회 및 피해자 사례발표'를 갖고 이법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오늘 현재 접수된 피해건수는 약 7백여건이며 전하나 상담을 통한 피해자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이법의 폐지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고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모임>과 본 상담소에서는 보다 활발하게 이법의 폐지 운동을 전개시켜 나갈 생각이다.

하여 계모가 되어 전처의 아이들을 기르느라 속을 끓였던 여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마음 고생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가족법 이후 자식들이 법정 모자관계를 부정하는 조항을 악용해 '당신은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다'고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이런 행동은 법적 문제로 발전해 가면 전처 자식을 자기자식처럼 키워 노후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여성들이 커다란 배신감을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일시에 친척, 상속권의 상실이라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생긴 것.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적모서자와 계모자 관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가정법률상담소 광배회상담위원은 지적한다.

또 개정가족법이 어머니의 친권을 인정함에 따라 양육만을 하던 여성들이 법적인 친권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 이 역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홍보작업이 충분하지 않아 친권변경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개정가족법에 따라 어머니가 호적상의 친권자로 지정되면 주민등록상에도 동거인이 아닌 친모자관계로 기재할 수 있고 아이들이 보호, 교양, 거소지정 등에 대한 권리의무와 의료보험, 주택신청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친권자가 어머니로 변경기재된 호적을 제시해도 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들은 '그런 법을 잘 모른다'며 기재변경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배희 씨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홍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를 양육해 온 많은 여성들이 친권 신설조항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행정기관의 홍보작업을 촉구한다.

분할재산에 증여세 물려

개정가족법이 시행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또 한가지 부분은 재산분할 청구권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 5월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약사 김 모 씨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에는 결혼 후 재산증식액 3천4백만원 중 1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 경우와 같이 아내의 소득출처가 명백한 맞벌이 부부는 40~50%의 지급이 되고 있으나 가사노동을 전담해 온 전업주부는 그 기여도가 전재산의 20~30% 정도로 계산되고 있다.

현재 가사노동의 가치는 50만원 선이라는 대략적인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데 이는 세법상의 인적 공제액(1억+6백만원×결혼연수) 계산에서 6백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값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10년간 가사노동의 대가는 6천만원으로 4~5억의 재산과 비교하면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또 위의 약사의 경우 3천4백만원 중 1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50%의 지급으로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전세금 증가액을 반반씩 나누었을 뿐이고 결혼기간 동안 아내의 가사노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판결이다.

김숙자(명지대 법학) 교수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와 그에 따른 분할기준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나 그것은 지엽적인 고려 사항이 될 뿐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은 2분의 1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가정상담>9월호)"고 밝히고 있다.

적극적 홍보로 부작용 줄여야

개정가족법 중 재산분할 청구권과 상속순위 변경에 따른 여성들의 재산권 행사는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가사노동의 기여도가 다소 불리하게 평가되는 듯해도 판례가 쌓여감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내다본다.

오히려 여성운동에서 문제로 삼아야 할 부분은 분할 받은 재산액에 대한 증여세 부분이다. 현행 세법은 분할받은 재산액 중 인적공제액(1억+6백만원×결혼연수)을 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숙자 교수는 이 규정이 "장차 위헌 논쟁을 일으킬 것이며 재산분할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가정상담 9월호)"고 본다.

이와같은 개정가족법이 첫시행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보수적인 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며 개정 초기에 주장했던 바와 같이 '개악'이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징후들일 뿐이고 오히려 이런 부작용은 당국이 강한 시행의지를 갖고 홍보작업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